

# 공 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공고 제 2017 - 12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7월 5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각 및 언어 장애인을 위한 수화언어 활성화를 통해 청각 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참여증진 및 언어권리 신장을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구청장은 수어와 농문화 발전을 위해 수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구민, 공공기관 등의 직원에게 수어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4조).

다. 청각 및 언어 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수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안 제5조)

라. 구청장은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증진 및 수어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6조)

###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로 185(등촌2동 512-1) 강서구의회  
(전화 : 2600-1807, 팩스 : 2600-1840)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의 목적은 한국수어를 발전시키고 수어 사용을 보장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각 및 언어 장애인(이하 '청각장애인 등'이라 한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어'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2. '농문화'란 청각장애인 등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 양식의 총칭을 말한다.
3.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4. '공공기관 등'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및 강서구 소속 행정기관과 출연기관, 출자기관을 말한다.
5. '공공시설 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강서구가 설치한 공연장, 관람장, 체육관 등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활성화) ① 구청장은 한국수어를 교육·보급하고 농문화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강서구민과 공공기관 직원 등의 수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수어 통역사 인력을 늘리고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지원을 확대하며, 수어 통역사와 수어 통역 관련 전문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적극적

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청각장애인 등의 편의증진) ① 구청장은 청각장애인 등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자막 및 수어 통역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 등과 공공시설 등은 공공행사, 공공시설이용, 공영방송,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어 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 등과 공공시설 등은 수어 영상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시설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제6조(지원) ① 구청장은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를 증진하고 수어를 활성화하기 위해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직접 주최하는 행사에 수어 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 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구청장은 청각장애인 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및 관련 서비스 등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표창) 구청장은 수어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강서구민, 공무원, 법인, 단체에게 「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